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64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김영배·박홍배·이정문

홍기원 · 김태년 · 김동아

문정복 · 김영호 · 이학영

문금주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단서 및 제10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모든 퇴직 공직자는 해외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해외기관·기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나 퇴직공직자"로, "단서"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단서"를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0항, 제1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 ② ----단서 및 제10항 단서 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 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 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에 관한 업무인 모든 퇴직 공 직자는 해외기관 · 기업에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공직자 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 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u>해외기관·기업 간에</u>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 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

언학 수 있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 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 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 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 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 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

<u> </u>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
나 퇴직공직자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
②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

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
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7조제1항 <u>단서</u>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1 /칢레리 가ბ)
 (현행과 같음)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
2. <u>단시 및 돈단 또 제10 8</u> 단서
<u>u </u>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 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
<u>10항</u>
세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u>같은 조 제10항 단서</u>
 ② (현행과 같음)
少(ひず竹 乍百)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저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기	<u>제1항</u> 을	위반	하여	취
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	한
업무관련	성이 있	있는 추	입업심	사
대상기관	에 취업	한 사	람	
2. • 3. (생	략)			

세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1.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
<u>0항</u>
2.•3. (현행과 같음)